□ 노인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

구비서류

① 서비스 이용계약서 1부,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1부, 표준이용계획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수급자 및 보호자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재가급여(월한도액)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① 일반 : 비용의 15% ②경감대상자 : 비용의 9%, 6% ③기초생활자 : 무료로 한다.

④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100% 부담

방문요양(수가) 2024. 1.1 적용

방문요양서비스(방문당)	금액(원)	공휴일 가산금(30%)
(1) 30분이상	16,630	62,620
(2) 60분이상	24,120	31,360
(3) 90분이상	32,510	42,260
(4)120분이상	41,380	53,790
(5)150분이상	48,250	62,730
(6)180분이상	54,320	70,620
(7)210분이상	60,530	78,690
(8)240분이상	66,770	86,800

2.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이용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2)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3. 계약해제 및 취소

이용규칙의 위배 및 본 재가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의료지원 서비스

의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응급 시 119 및 응급이송 체계 의료기관 연계.

② 비상연락망체계에 의거 연락조치.

③ 수급대상자의 요구에 의거 병원에 동행(운전)할 수 는 있으나,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요양보호사의 책임이 없는 조건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신원인수의 의무와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과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 퇴소 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시 고려해야 될 사

항이나 특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6.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요양 보호사의 재가 서비스도중 고의로 인한 책임은 요양보호사가 가진다.
   (다만 천재지변 및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기타의 사유로 발생된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본 센터가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른다.